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기관 의 장
선	
람	


제 1906 호 1995. 6. 26.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훈 령
 - 제 818 호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3
 - 제 819 호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폐지규정 4
- 고 시
 - 제 1995-174 호 사료성분등록 4
 - 제 1995-176 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5
- 공 고
 - 제 1995-180 호 도시계획사업(상봉동99-1~301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공람공고 6
- 구 고 시
 - 제 1995-3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대문) 6
 - 제 1995-54 호 도시계획사업(동덕여대이면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동) 7
 - 제 1995-3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초) 7

<이면계속>

공											
람											

 서울특별시

1666

제 1995-33 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및지적승인(서초)7
 제 1995-2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영등포)8
 제 1995-22 호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지적승인(관악)8
 제 1995-23 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학교·도로)결정및지적승인(관악)9
 제 1995-2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관악)10
 제 1995-45 호 도시계획사업(성수1가656-1758-656-1223간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성동)10
 제 1995-35 호 하천점용허가(강남)11

● 구 공 고

제 1995-129 호 도시계획공람공고(관악)11
 제 1995-162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완료(강남)11
 제 1995-67 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공고(강북)12
 제 1995-154 호 통행의제한에관한공고(성북)13
 제 1995-95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영등포)14
 제 1995-14 호 공공하수도사용계시(서대문)14
 제 1995-168 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강남)15
 제 1995-129 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도봉)16
 제 1995-218 호 도시계획사업(대법원청사신축)실시계획(변경)안공람공고(서초) ---19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5-73 호 하천점용허가20

● 교육청입찰공고

제 1995-15 호 강리용역제입찰공고20
 제 1995-16 호 공사입찰공고21
 제 1995-20 호 설계용역입찰공고22

● 서울지방경찰청고시

제 1995-8 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신체검사신고의토기관운영에관한고시23

● 인사발령

훈 령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 6. 26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

●서울특별시훈령제818호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
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할청 지정) 공공시설의 관할청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한강상교량 인터체인지의 관할 경계는 별도로 정함.

(별표) 중 1. 도로의 순위 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위	명 칭	위 치	해당청	관할청	한 계
4-1	청 계 로	조용은령 분점-동대문시장 (종로5가동 경계)	종로구 중 구	종로구	폭은 차도 경계선까지
4-2	청 계 로	동대문시장(종로5가동 경계) -난계로교차점	종로구 중 구	중 구	.
4-3	청 계 로	난계로교차점-청계로9가	동대문구 성동구	성동구	.

(별표) 중 1. 도로의 순위 41란 다음에 순 위 4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위	명 칭	위 치	해당청	관할청	한 계
42	남 부 순환도로	시흥 IC-가리봉동 515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폭은 차도 경계선까지

(별표) 중 3. 육교의 순위 32란 다음에 순 위 33란~순위 3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순위	명 칭	위 치	해당청	관할청	한 계
33	가리봉전철 차도 육교	가리봉동 515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육교의 전부
34	구 로 차도육교	가리봉동 140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
35	가리봉2동 앞 보도 육교	가리봉동 2-160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
36	남부APT 앞 보도 육교	가리봉동 137-5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공공시설 관할청의 한계가 모호함으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규대상 공공시설의 관할청을 지정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가로수와 녹지대 관리를 도로의 관할청에서 행정구역 관할청이 관리하도록 변경(제3조)
- 나. 청계로의 관할청과 관할 한계를 변경(별표 중 1. 도로 순위 4)
- 다. 공공시설의 관할청 지정(별표 중 1. 도로순위 42, 3. 육교순위 35-36)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 6. 26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㉔

●서울특별시훈령제819호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1. 폐지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시와 자치구의 사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132조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이중 위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에 관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동 규정은 지방자치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한 시·구사무 중 구사무에 대하여 시 부담을 규정하거나, 시위임 사무에 대하여 구의 경비부담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임에도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시내부의 혼령적 규정으로 자치구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앞으로 동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 폐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5-174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같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6. 26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업체명: 팻트이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33

대표자: 오훈일

등록사료(5종):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 칭	사 료 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795	수입배합 사 료	어린개용 사료(퍼피)	1호 영양공급과 건강 유지	28.0%	15.0%	1.2%	0.9%	3.0%	7.6%
서울-796	수입배합 사 료	어린개용 사료(하이프로)	2호 영양공급과 건강 유지	27.0%	13.0%	2.0%	1.25%	4.0%	9.0%
서울-797	수입배합 사 료	큰개용 사료(어덜트)	1호 사 영양공급과 건강 유지	26.0%	12.0%	1.3%	0.8%	3.0%	7.2%
서울-798	수입배합 사 료	큰개용 사료(라이트)	2호 사 비만성견체 중 및 건강 유지	18.0%	8.0%	1.0%	0.75%	15.0%	6.0%
서울-799	수입배합 사 료	큰개용 사료(렐&라이스)	3호 사 영양공급과 건강 유지	26.0%	12.0%	1.4%	1.0%	3.0%	7.5%
2. 등록업체명: 두원실업(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2				대표자: 김상수					
등록사료(2종): 프랑스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 류	사료의 명 칭	사 료 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800	수입배합 사 료	어린개용 호 사료 (몽시안)	6 생후2년까지 성 장기 강아지용	10.0%	4.5%	0.3%	0.2%	0.5%	2.5%
서울-801	수입배합 사 료	어린개용 호 사료 (몽시안)	7 생후2년까지 성 장기 강아지용	10.0%	4.5%	0.3%	0.2%	0.5%	2.5%
◎서울특별시고시제1995-1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 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 계획과와 광진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1995. 6. 26 서울특별시 장</div>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결정	송파자연 공원	광진구 광장동 370 일대	5,052,603	5,058,133	증 5,530	임상양호지 추가 결정
나. 도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광진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 고</div>			2.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음 경우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995-180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995. 6. 26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한 다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가. 공람공고: 1995. 6. 15~1995. 6. 29 (14일간)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관리과(490-3401-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토목부(460-2343-4)			
1) 사업 개요						
사업명	시행구간	규모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고시일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 승인고시일자	비고	
도시계획사업(도로) 301	중랑구 상봉동 99-1~상봉동	B=20~26m L=630m	서울시고시 제1995-84호 (95. 3. 28)	중랑구고시 제1995-19호 (95. 4. 6)		
2)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3)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3년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공람 장소에 비치 5)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서대문구고시제1995-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구 고 시</div>			1995. 6. 26 서대문구청장			
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 태진재건축 주택조합
- 3. 사업시행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322-59, 119호 권지
- 4. 대지면적 : 7,381.95㎡
- 5. 연면적 : 32,367.34㎡
- 6. 규모 : 아파트 3개동 8~17층 2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성북구고시제1995-5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5-46호(95. 5. 19)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한 "동덕여대 주변 이면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5-48호(95. 5. 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재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제2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와 건설관리과(920-4300)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성 북 구 청 장

- 가. 사업내용 변경 : 변경 없음(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재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 사항 없음.)
- 나. 기타사항 변경 없음.

●서초구고시제1995-32호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니다.

1995. 6. 26

서 초 구 청 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2. 사업자 : 신반포 한국전력기술(주)직장 주택조합 외 1 조합대표 이상십 외 73명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가. 건설위치 : 서초구 잠원동 54의 4필지
 - 나. 대지면적 : 2,315.10㎡
 - 다. 건축면적 : 578.65㎡
 - 라. 건축연면적 : 10,782.71㎡
 - 마. 건설규모 : 아파트 1동 91세대
- 4. 다른 법률 의거 : 건축법 제8조
- 5. 사업시행기간 : 1995. 6~1997. 5

●서초구고시제1995-33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결정및지적승인

- 1. 우리 구 영곡동 302 일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서 초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노선 번호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광로	1	33	50~53.5	7,580	서초구	양재동 (광로 28호)	송파구	장지동 (광로 29호)	영곡동 302	B=3.5m, L=30m
변경	·	1	33	50~53.5	7,580	·	·	·	·	·	확장
결정	소로	1	4	10	102	서초구	영곡동 302	서초구	영곡동 302	전기공급 설비 진입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증감	비고
기정	연구시설	서초구 영곡동 300-4 일대	34,877.9	증) 380.9㎡	
변경	·	·	35,258.8		

다. 관계도면: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지적과의 비치도면과 같음.

●영등포구고시제1995-2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 58550-317호(95. 3. 3)로 승인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6. 26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우승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장규석

- 소재지: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15 의 2필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건립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15 의 2필지

나. 대지면적: 4,879.20㎡

다. 규모: 지하 2층 지상 9~16층 아파트 (1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연면적: 19,585.33㎡

마. 사업시행기간: 95. 5~97.

바. 변경내역

변경 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증감
전 속 면 적	1,341.95㎡	1,318.17㎡	- 23.78㎡
연 면 적	19,531.40㎡	19,585.33㎡	+ 53.93㎡
전 례 율	27.50%	27.01%	- 0.49%
용 적 륜	289.90%	291.06%	+ 1.10%
기 타	지하 저수조 형태변경 및 용량감소(430 TON → 220 TON)		

●관악구고시제1995-22호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38호(94. 4. 27)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지적승인 조서

지 구 명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지구(최고고도)	진입표면(해발 269.61m~372.86m 미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7,316,600	

나. 관계도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비치도서와 같음(도시생략).

●관악구고시제1995-2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학교·도로)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54호(95. 5. 3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71호(95. 6. 12)로 각각 변경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학교)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여객자동차정류장	관악구 봉천동 산 152-36 일대	2,848	자동차정류장내 도로 신설예정부분 제외(면적감 507㎡)
변경	자동차정류장	관악구 봉천동 1537-2, 3	2,341	
기정	학 교	관악구 봉천동 1690-133	1,886.4	서울예술고등학교 면적증가(558.2㎡)
변경	학 교	관악구 봉천동 1690-133 외 2	2,444.6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결정	소로	2	8	63	관악구 봉천동 1537-3	관악구 봉천동 1537-3	

다. 관계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도시 생략).

● 관악구고시제 1995-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05호(92. 10.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1992-37호(92. 11. 19)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의3, 제8조,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의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300	관악구 신림동 412-310	관악구 신림동 610-407	시·종점 변경 없이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변경	소로	3	6	286	관악구 신림동 412-310	관악구 신림동 610-407	위치변경 및 이로 인한 도로연장 조정

나. 관련도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비치도시와 같음(도시생략).

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성 동 구 청 장

● 성동구고시제 1995-4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1995-25호(95. 4. 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성수1가동 656-1758~성수1가동 656-122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가. 사업개요: 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다.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변경 없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마.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토 지 조 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당초	성 동 구 성수1가동	656-1211 대	757	459	(주)시장 슈퍼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동 656-269	
	변경	성 동 구 성수1가동	656-1211 대	757	757	(주)시장 슈퍼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동 656-269	

●강남구고시제1995-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점
 용허가를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25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5. 6. 26
 강남구청장

허가 일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기간	점용료	수 허가 자	
					주 소	성 명
1995. 6. 16	탄천~탄천2교 고수부지상	248.26	95. 6. 1~ 95. 6. 31	88,870원	강서구 화곡동 1903-1 스공사 수도권 건설사무소	한국가 김규빈

구 공 고

●관악구공고제1995-129호
 도시계획공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자 도시계획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
 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
 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관악구청(도
 시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승
 달불능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기간: 95. 6. 15~95. 6. 28(14일
 간)
 나. 공람장소: 관악구청 도시정비과(880-
 3385~7)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1995. 6. 26
 관악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	595	신림동 812-10	신림동 251-255	건영아파트~신동 아아파트간

2)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설	전기공급설비 (154kv 신림변전소)	관악구 신림동 산 56-1	5,500㎡	서울대 구내 학교용지

●강남구공고제1995-162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완료공고
 1. 강남구고시 제1992-8호(92. 2. 11)로 도
 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일원동 679 일대
 도시계획사업(시장)에 대하여 사업 완료되
 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및 제8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다.

2. 관계도시는 강남구청 산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강남구청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7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시장)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96 호정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근섭
 라. 사업규모 (단위: m²)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도시계획사업		비도시계획시설		비고
			시	장	아파트	주차장및기타	
1,354.9	674.30	5,730.66	1,647.25	2,971.33	1,112.08	○ 지하 2층~지상 6층 ○ 시장: 지하 1층~지상 1·2(일부)층	

마. 사업기간: 허가일로부터 1995. 6. 20
 바. 준공도면: 별첨(생략)
●강북구공고제1995-67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
 1.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연차별 집행계획 조서: 별첨
 나. 도면: 생략
 1995. 6. 26
 강북구청장
 1. 연차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m²)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 단계		2 단계		
	전수	면적	전수	면적	전수	면적	
타 고	8	105,993	4	51,304	4	54,689	○ 1단계: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시행예정 ○ 2단계: 공고일로부터 3년 이후 시행예정
공 원	2	867,704.9			2	867,704.9	
도 로	5	51,655	2	28,200	3	23,455	

2. 연차별 집행계획조서								
(단위: m, m ²)								
연번	사업의 번호	사업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 또는 규모	시행 기간	비고	
1	학교설립	·	번 일 국	강북구 변동 456	A=13,191	1단계		
2	·	·	신 화 중	강북구 변동 456	A=13,191	1단계		
3	·	·	미 아 중	강북구 미아동 산 100-28	A=6,900	2단계		
4	·	·	미 일 국	·	A=9,000	·		
5	·	·	수 이 국	강북구 우이동 103-1	A=18,789	·		
6	·	·	수 이 중	·	A=20,000	1단계		
7	·	·	혜화여고이전	강북구 수유동 491-16	A=16,000	·		
8	·	·	목수 학교	·	A=7,810	·		
9	공원조성	·	미아동어린이공원	강북구 미아동 128-8	A=369.9	2단계		
10	·	·	오동근린공원	변동 산 5 일대	A=867,335	·		
11	도로개설	·	화계사입구~상북구 제간 도로확장공사	수유동 461-19~미아동 837-734	A=24,400 B=20 L=1,220	1단계	B=12~ 20 L=1,220	
12	·	·	미아동 460 주변 도로개설공사	미아동 460-2~460-103	A=3,800 P=20, L=190	·		
13	·	·	번2동 138~산 28 간 도로개설공사	번2동 137-3~산 28-25	A=2,500 B=10, L=250	2단계		
14	·	·	미아동5구역 재개발구역 진입도로개 설공사	미아4동 103-148~645- 132	A=4,455 B=15, L=297	·		
15	·	·	미아4동 창문여고 ~번동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공사	미아4동 103-148~번동 산 1-3	A=16,500 B=15 L=1,100	·		
3. 연차별 집행계획 변경조서								
연번	사업의 번호	사업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 (m ²)	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1	·	·	·	·	13,191	2단계	1단계	학생수용계획 조정
2	·	·	·	·	13,191	2단계	1단계	·
●성북구공고제1995-154호 통행의제한에관한공고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어음로 그 통행을 일시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1995. 6. 26			

성북구청장					
도로의 종류	서울특별시도	시설물명	별 함		
제한의 대상	별함 총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및 중기	구 간	별함 동행제한시설 구간		
기 간	자 1995년 6월 일	지	무기한		
이 유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 위험 방지				
기 타	우회도로 안내 별함				
“위치도” 별첨 생략					
동행제한시설 및 제한내용					
시 설 명 의 치	시설규모	동행제한차량	봉 색 기 간	우회도로	
종 월 교	종암동 3	B=6m, L=36m	10TON 이상	95. 6.~무기한	종암대교
화 랑 교	종암동 93	B=7m, L=20m	5TON 이상	95. 6.~무기한	월 알 교
스카이웨이교	정동동 544-1	B=8m, L=60m	12TON 이상	95. 6.~무기한	성북동길
<p>●영등포구공고제1995-95호 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고 동법시행령</p>		<p>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6. 26 영 등 포 구 청 장</p>			
양 도 인 가 일	1995. 6. 14				
업종 및 면허번호	업종: 의장공사업		면허번호: 제91-01-462호		
인 가 자	영 등 포 구 청 장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주)현대모놀내장		(주)정 란		
대 표 자	홍 영 기		박 경 우		
영 업 소 재 지	영등포구 대림동 700-3		서초구 반포동 707-7		
<p>●서대문구공고제1995-14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하수도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다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 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5일간 관계도면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1995. 6. 26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열람장소: 서대문구청(하수과) 나. 공람기간: 1995. 6. 16~1995. 6. 29</p>			

다. 공공하수도 신설 현황								
연번	위 치	배수구역	사용재시 일 자	하수도 개요			합· 분류식	비고
				관저종류	관 경	관저연장		
1	충정로 227-3~ 250-60간	옥천 배수구역 냉천 배수분구	1995. 6. 27	소켓홀관	D=600~ 1,000㎜	101m	합류식	

●강남구공고제1995-168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

1.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

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6
강남구청장

가. 연차별 집행계획조서

일련 번호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면적 또는 규 모	시행기간	비고
1	도	로 소로2류 호선 (도로개설)	도곡동 545~도곡동 383-32	B=8m L=215m	1단계 (95-96)	
2	도	로 소로1류 호선 (도로개설)	도곡동 909-1~도곡동 907-43	B=10~12m L=140m	1단계 (96-97)	
3	공	원 갈매기 근린공원	압구정동 811-1	7,732 ㎡	1단계 (96-97)	
4	학	교 고 등 학 교	압구정동 423	14,999.8㎡	2단계 (2003)	
5	공용의 청사	대 처 2 동 사무소	대 처 동 994-17	981.3㎡	1단계 (95)	
6	수	도 개포배수지	개포동 산 156-2	49,734 ㎡	1단계 (97-99)	

나. 연차별 집행계획 변경조서

일련 번호	사업의 종 류	명 칭	위 치	면적또는 규 모	시 행 기 간		비고
					당 초	변 경	
1	운동장	역삼운동장	역삼동 653-4	6,908㎡	1단계 (92-)	1단계 (96-97)	
2	도	로 소로3류 호선 (도로개설)	논현로~도곡동 195-1	B=6m L=120m	1단계 (94-95)	1단계 (96-97)	
3	도	로 소로2류 호선 (도로개설)	도곡동 농촌지도 소 진입로공사	B=8m L=190m	1단계 (95-96)	1단계 (97-98)	

일련 번호	사업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도는 규모	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4	도로	소로1류 호선 (도로개설)	도곡동 연구국로 앞	B=12m L=450m	2단계 (95-97)	2단계 (98-99)	
5	도로	소로2류 호선 (도로개설)	도곡동 삼성공- 현대체육관	B=8m L=98m	2단계 (96-97)	2단계 (98-99)	
6	공원	학동근린공원	논현동 26	29,947㎡	2단계 (96-)	1단계 (96-2000)	
7	공원	대왕근린공원	일원동 산 10-1	524,000㎡	2단계 (96-)	2단계 (98-2000)	
8	공원	세곡제1근린공원	세곡동 산 50	101,513.2㎡	2단계 (96-)	2단계 (98-2010)	
9	공원	동산(세곡제2)근 린공원	세곡동 산 1	98,417㎡	2단계 (96-)	1단계 (97-2000)	
10	학교	국민학교	수서동 406	12,240㎡	1단계 (93-94)	2단계 (98-)	
11	학교	중학교	일원동 산 63-1	12,000㎡	1단계 (93-94)	2단계 (98-)	
12	학교	고등학교	수서동 396	10,783㎡	1단계 (93-94)	1단계 (95-)	
13	학교	·	일원동 산 33	14,630㎡	1단계 (93-94)	1단계 (96-)	
14	학교	중학교	대치동 30-18	15,000㎡	1단계 (93-94)	2단계 (98-)	

●도봉구공고제1995-129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공고

1.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수립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경비과와 주관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6. 29
도봉구청장

가. 연차별 집행계획서

연번	사업의 종류	위치	면적 및 규모	시행기간	비고
1	도로개설	방학동 산 61-12~쌍문동 산 309-4	B=30m L=1,100m	95~98	1단계
2	·	상도교~시계간	B=25m L=900m	96~98	·

연번	사업의 종류	위 차	면적 및 규모	시행기간	비 고
3	도로개설	창동 104 2~산 도봉로	B=20m L=230m	97	1단계
4	·	창동 산 153~창동 산 17	B=25m L=220m	2000년 이후	2단계
5	·	창3동 452-25~465-2	B=8m L=110m	95~96	1단계
6	·	쌍문3동 389-6~388-1	B=15m L=180m	93~97	·
7	·	쌍문1동 437-10~431-13	B=15m L=410m	93~98	·
8	·	창1동 163-2~165-2	B=10m L=100m	97	·
9	·	쌍문2동 25-15~26-5	B=8m L=25m	97	·
10	·	방학2동 304-10~305-2	B=8m L=30m	97	·
11	·	방학3동 307-1 주변	B=8m L=80m	98~99	2단계
12	·	창2동 629-9~411-7	B=8m L=170m	98	1단계
13	·	쌍문2동 21~21-29	B=8m L=50m	98~99	2단계
14	·	창5동 219-5~241-32	B=8m L=150m	99~2000	·
15	·	쌍문동 360-25~359-2	B=8m L=35m	99	·
16	·	창3동 474-15~산 207-5	B=8m L=110m	2000	·
17	·	쌍문2동 산 21~47-2	B=8m L=30m	2000	·
18	·	창4동 서울외국어고교 주변	B=8m L=150m	2000~20001	·
19	·	쌍문2동 26~방학동 266	B=8m L=25m	2001	·
20	·	창4동 182-3~135	B=10m L=400m	2001	·
21	·	쌍문4동 산 306-1~525-5	B=8m L=466m	2001	·

연번	사업의 종류	위 치	면적 및 규모	시행기간	비 고
22	도로개설	생문1동 352-37~352-38	B=8m L=112m	2001	2단계
23	"	방문4동 244-1~방학동 489-1	B=8m L=45m	2001	"
24	"	생문4동 산 83-2~160-1	B=8m L=100m	2001	"
25	"	방학3동 안방학로~313-11	B=8m L=110m	2001	"
26	"	방학3동 285 주변	B=8m L=60m	2001	"
27	"	창3동 504-31~514-2	B=8m L=180m	2001	"
28	"	도봉1동 352-18~352-20	B=8m L=50m	2001	"
29	"	도봉1동 357~377	B=10m L=260m	2001	"
30	"	도봉2동 22~36	B=12m L=300m	2001	"
31	"	도봉2동 4~40	B=10m L=250m	2001	"
32	"	도봉2동 1~8	B=8m L=250m	2001	"
33	"	도봉2동 군인아파트	B=15m L=270m	2001	"
34	하천정비	방학3동사무소~생문동 제일시 장	B=6~15m L=1,000m	95~2001	"
35	운동장조성	창동 1-6	A=73,600㎡	98~99	"
36	학교설립	창동 181-17(국민학교)	A=11,613.9㎡	96	1단계
37	"	창동 694-10(국민학교)	A=17,945㎡	98	2단계
38	"	도봉동 608-22(국민학교)	A=10,165㎡	99	"
39	"	도봉동 625-29	A=5,648㎡	2001	"
40	"	창동 150(중학교)	A=11,295.4㎡	2000	"
41	"	생문동 468(고등학교)	A=20,857㎡	99	"
42	"	도봉동 556(중학교)	A=12,798㎡	2004	"
43	시 장	창동 1-11	A=17,160㎡	94~98	1단계
44	사회복지관 건 립	창동 1-7	A=5,970.7㎡	96~98	"

연번	사업의 종류	위 치	면적 및 규모	시행기간	비 고
45	원 계 관련공헌	창동 산 21 일대	A=673,166㎡	96~2000	2단계
46	방 문 관련공헌	방학동 산 55-5 일대	A=328,100㎡	.	.
47	공용의 청사	도봉동 636-10	A=393.1㎡	93~95	1단계
48	.	쌍문동 327 외 1필지	A=943㎡	94~95	.
49	전기공급설비	쌍문2동 715-2	A=6,169㎡	95~96	.

●서초구공고제1995-218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실시계획
(변경)안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86호(90. 8. 27)로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시행 허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32호(91. 11. 15)로 동 사업시행(변경) 허가되어 사업시행 중인 서초동 967 일대 대법원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동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1995. 6. 17~1995. 7. 1(14일간)

2) 공람장소: 서초구 도시정비과(750-6385~7)

1995. 6. 26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서초구 서초동 967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1) 종류: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2) 명칭: 대법원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1) 대지면적 { 당초: 56,275.1㎡
 변경: 57,820.1㎡
 2) 건축규모 { 당초: 9,743.17㎡
 변경: 9,765.71㎡
 2) 건축연면적 { 당초: 66,075.43㎡
 변경: 66,610.03㎡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 없음)
 1) 주소: 중구 서소문동 37
 2) 성명: 법원행정처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없음): 1990. 8. 27~1995. 12.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추가분

사.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서: 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지 번	지목	지적(㎡)	권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산 170-12	임야	44	44	서울시장		신규편입
-13	"	46	46	현 중 훈		"
-16	"	114	114	"		"
산 172-8	"	910	910	정 철 호		"

지 번	지목	지적(㎡)	권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산 172-4	임야	208	208	대 법 원		신규권입
-11	·	100	100	·		·
산 176-12	·	528	34	한 용 식		·
1748-9	도로	416.2	89	서울시장		·
계		2,366.2	1,545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6. 26

한강관리사업소장

허 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 면적	점용 목적	점용기간	허가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5. 6. 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 선 한강	하천	66.5㎡	유선장	95. 6. 17~ 95. 12. 31	서울시 영등포구 당 산동3가 559 평화 C-525	여의도보트 대표 박 홍 식

교육청입찰공고

●교육청공고제1995-15호
감리용역재입찰공고

1. 감리용역명: 한성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감리용역
2. 입찰일시 및 장소: 95. 7. 3. 15:00 교육청 입찰실
3. 과업내용설명일시 및 장소: 95. 6. 29. 14:00 건축과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95. 7. 1. 13:00 재무과(입찰등록실)
5. 입찰참가자격: 건축사법에 규정한 건축사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6. 입찰방법: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7. 본 영역의 입찰참가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동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당청비치)를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 면제기준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각호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소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 귀속됩니다.

10. 기타

가.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용의뢰서, 기술용역일반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설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람(예산회법팅 및 예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장리용역의 총중역금액은 89,505,000원이고, 1차계약금액은 70,000,000원이고,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병행합니다. 다만, 우편입찰은 개찰일시까지 도착한 입찰서에 한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등의 책임을 우리 교육청은 지지 아니합니다. 상시입찰 기간은 95. 6. 29일부터 입찰당일 입찰 개시 전까지입니다.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서는 2차 이후 입찰시에도 유효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 8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교육청 재무과(3999-4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5. 6. 26

서울특별시교육청경리관

●교육청공고제1995-16호

공사입찰공고

- 1. 공사명 : 태능고등학교 난방설비공사
- 2. 입찰일시 및 장소 : 95. 07. 15. 11 : 00
교육청 입찰실
- 3. 현장설명
가. 일시 및 장소 : 95. 7. 4. 14 : 00 태능고등학교 정문
나. 참가자격 : 건축기사 2급 이상
-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95. 7. 14. 18 : 00 재무과(입찰등록실)
- 5. 입찰참가자격 :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사업면허를 소지하고, 본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내인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편한 업체

- 6. 입찰방법 : 총액입찰
- 7. 실재금액 : ₩207,515,000원(관급없음)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9. 본 공사의 입찰참가희망자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동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당첨비치)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 면제기준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10. 입찰의 무효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각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11.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12. 상시 및 우편입찰 안내 : 본 공사는 상시 및 우편입찰이 가능하며 입찰시간 전까지 도착된 우편입찰서와 당청에 설치된 "상시투찰함"에 투입된 입찰서에 한하여 유효처리됩니다. 상시투찰은 입찰일 3일 전 부터 입찰시간 전까지 투찰할 수 있으며, 본 입찰서는 2차 이후 입찰시에도 유효합니다.
- 13. 기타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일반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85% 이상 입찰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단, 관계규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교육청 재무과(3999-41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5. 6. 26

서울특별시교육청경리관

●중부교육청공고제1995-20호
실계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	모	예	산	액	비	고
서울교동국민학교	4,058㎡	본	실계용역의	예산액은	₩119,873,000	원으로		
교사재건축실계용역 내 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2. 입찰일시 및 장소 : 1995년 7월 13일(목)

10:00 우리 교육청 대회의실

3. 과업지시서 설명일

가. 과업지시서 설명일시 및 장소 : 1995.

7. 3(월) 10:00 우리 교육청 시설과

나. 참가자격 : 건축사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1995. 7. 12

(수) 18:00 우리 교육청 재무과

5. 입찰참가자격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등록을 서울특별시내에 관한 업체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자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및 120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라. 건축사면허수첩 사본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1부

바.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1부

사.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아.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복수조건,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입찰도 가능하며 입찰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유효하오니 등기속달이나, 특급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교육청 재무과에는 "상시투찰함"이 설치되어 있으니 입찰등록시부터 입찰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할 수 있으며 지정함 및 기간에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입찰서는 우리 교육청 양식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공고번호, 입찰연월일, 업체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금액을 토대로 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5개 작성하고 그중 2개를 추첨하여 개봉 후 평균가격을 산정, 동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제

문과 경리계(763-00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5. 6. 26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경리관

서울지방경찰청고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고시
제1995-8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신체검사신고

의료기관운영에관한고시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69
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전면허신체
검사신고및변경의료기관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5. 6. 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신고의료기관운영
에관한고시 중 신고번호 11-173 및 11-2,
11-21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신 규

신고번호	병 원 명	의사면허번호 의 사 성 명	대표자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부일자
11-172	서 울 성모의원	제24356호 신 동 동	신동동	성북구 동선동4 가 26	561015- 1037915	923-5348	95. 6.
11-173	서 울 중앙병원	제28554호 박 세 순	박세순	종로구 세종로 178	291113- 1041531	224-4966	95. 6.

○ 변 경

신고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병 원 명	면허 번호 의 사 성 명	소 재 지	병 원 명	면허 번호 의 사 성 명	소 재 지
11 - 2	중 앙 의 대 부속병원	제23302호 유 왕 성	중구 필동2 가 82-1	중앙의대 부속병원	제 1349 호 장 세 경	중구 필동2 가 82-2

신고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병 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병 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신고번호	영 암 병 원	장영태	강동구 성 내동 551-1	효동병원	노 통 발	강동구 성 내동 551-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사발령

검두명령

●1995년 6월 15일자

영 제316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신금주	청소사업본부 시설관리국장 겸무	청소본부 청소국장	지방 보이사관

서울특별시

목경 서울관 주재관 파견

●1995년 6월 15일자

영 제317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신동우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 근무 북경서울관 파견근무를 명함 (95. 7. 10~97. 7. 9)	공보관	지방 보이사관
2	오승환		상공과 (산업구조 조정 기획요원)	지방행정 사무관

서울특별시

4급 공무원 전보 및 파견

●1995년 6월 15일자

영 제318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병일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 근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파견 95. 6. 15~97. 6. 14 (2년)	국제교류과장	지방 서기관
2	이성	문화관광국 국제교류과장	내무국	·
3	서강석	내무국 대통령비서실 파견 95. 6. 15~96. 6. 14 (1년)	전산통계담당관	·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4	정 순 복	기획관리실 전산통계담당관 직무대리	동대문은영관	지방 서기관
5	전 귀 권	내 무 국	민방위과장	서기관
6	길 장 호	민방위국 민방위과장 직무대리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지방 서기관
서울특별시장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1995년 6월 16일자			영 제319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영 기 551025-1406310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4-61 95. 5. 15)에 의하여 94. 6. 21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정수사업소)	지방화공 주 사
2	박 용 우 560710-1058517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4-71 95. 5. 15)에 의하여 94. 6. 21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체육시설관리 사 업 소	지방건축 주 사
3	심 형 보 661111-1052818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4-87 95. 5. 15)에 의하여 94. 8. 31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하 수 국 하 수 처 리 과	지방토목 주 사 보
4	안 완 순 550120-1471910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4-107 95. 5. 15)에 의하여 94. 10. 28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가 양 하 수 처 리 사 업 소	지방토목 주 사 보
5	김 전 우 580403-134762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4-68 95. 5. 15)에 의하여 94. 6. 14자 감봉2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건축 주 사 보
6	곽 동 호 610630-190351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 94-82 95. 5. 15)에 의하여 94. 8. 2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도시시설안전 관 리 본 부	지방건축 주 사 보
서울특별시장				

7급이하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1995년 6월 17일자			영 제320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유석운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내무국 (교통특별대책본부)	지방행정 주사보
2	김기호	·	교통기획과	·
3	이영희	·	감사 2 담당관	·
4	동창옥	·	내무국 (생활개혁추진본부)	·
5	임태성	·	감사 1 담당관	·
6	배승재	·	내무국 (시정경영진단반)	·
7	하상문	지방토목주사에 임함	도로시설과	지방토목 주사보
8	최수용	지방토목주사에 임함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 주사보
서울특별시				
인사발령통지				
●1995년 6월 16일자			영 제321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부이사관 조성두(趙誠斗)				
이사관에 임함			1995. 6. 16	대통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부이사관 윤우길(尹佑吉)				
이사관에 임함			1995. 6. 16	대통령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부이사관 서찬교(徐贊敎)				
이사관에 임함			1995. 6. 16	대통령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부이사관 권오복(權五鹿)				
이사관에 임함			1995. 6. 16	대통령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부이사관 김승규(金承珪)				
이사관에 임함			1995. 6. 16	대통령
서울특별시				